

제308회 임시회

2012.4.25(수)

심 사 보 고 서

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산업경제위원회

「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
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2. 4. 25 (수)

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윤성옥 의원 외 6명

나. 발의일자 : 2012년 4월 6일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4월 10일

라. 상정일자 : 2012년 4월 18일

(제30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윤성옥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재단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명시함은 물론 기본재산의 조성 등 관련 조례안을 체계화함으로써 조례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중기센터의 주요사업 명시(안 제3조)
- 기본재산의 조성(안 제4조)
- 중기센터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 및 검사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송장섭)

- ‘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’은 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기본재산 조성 명시 등 관련 조례안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재단법인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한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한다.
2.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.

제3조(사업) 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(이하 “지원센터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산업·금융·경영·산업기술·무역정보 등의 제공
 2. 신기술개발 지원 및 종합기술 지도
 3. 일자리 지원 업무
 4.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·운영
 5.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애로상담 및 컨설팅 지원 사업
 6.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
 7.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
 8. 기술·경영 연수사업
 9. 지식경제부장관, 중소기업청장, 충청북도지사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
 10. 그 밖에 지원센터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② 지원센터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4조(기본재산의 조성)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도 및 시·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
2. 정부의 출연금 및 지원금
3. 출연을 원하는 기관·단체 및 기업체, 대학, 후원인 등의 출연금
4. 그 밖의 차입금

제5조(재정지원 및 공유재산의 대부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

한다)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제6조(업무의 위탁)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.

제7조(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위탁) 도지사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8조(보고 및 검사)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센터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업무·회계·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나 검사를 관련기관, 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와 지원센터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운영 및 집행 상황 등을 충청북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

정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실시된 제3조~제8조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.

관 계 법 령

□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

제49조(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지원)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□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63조(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설치지원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(이하 "종합지원센타"라 한다)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각종 산업·금융·경영·산업기술·무역정보등의 제공
2. 종합기술지도 및 연수실시
3.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
4.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
5.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센타의 운영
6. 기타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

② 시·도지사는 종합지원센타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이 일정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 및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·도지사는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지방조직에 대하여 입주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중소기업기본법

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"중소기업시책"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11.7.25>
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

가.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, 자본금,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

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

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한다.

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·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.

□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소기업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.
2. "소상공인"이란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으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